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가.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근로자측 제안)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외 대학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의 승진제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의 승진제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1항제5호)

- 1)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는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 파견 종료일까지 승진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 파견이 종료되는 날까지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6조(승진제한) ①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승진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3. (생 략) 가. ~ 나. (생 략) 4. (생 략) 가. ~ 나.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26조(승진제한)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5. <u>국내·외 대학 위탁교육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해당 교육훈련 파견이 종료되는 날 까지 그 기간 중에 있는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결 결과 반영